

「교수연구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16. 3. 1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70/compare?from=169&to=17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15:29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라 한다.	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라 한다. <개정 2016-03-01>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연구처장(위원장), 연구팀장(서기),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실장, 대학원장, 교수(2), 산학협력팀장, 초청(2: 음악학과장, 미술컨텐츠학과장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.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. <개정 2015-02-16>	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대학원장, 교수(2인, 임명직), 초청교수(2인, 음악학과장, 미술컨텐츠학과장), 재무처장, 연구팀장, 산학협력팀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<개정 2016-03-01>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.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. <개정 2016-03-01>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5-02-16> 1. 장.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. 연구 규정 제·개정 <개정 2016-02-29> 3.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중단 등 관리 4.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.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. 교외수탁연구 관련 사항 <개정 2016-02-29> 8. 연구소 평가 <개정 2016-02-29>	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-03-01> 1. 장.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. 연구 규정 제·개정 <개정 2016-03-01> 3.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중단 등 관리 4.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.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. 연구소평가<개정 2016-03-01> 8.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수연구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교수연구진흥위원회(이하"를 "교수연구위원회(이하"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대학원장, 교수(2인, 임명직), 초청교수(2인, 음악학과장, 미술컨텐츠학과장), 재무처장, 연구팀장, 산학협력팀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장·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
2. 연구 규정 제·개정
3.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중단 등 관리
4.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
5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
6.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
7. 연구소평가
8.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